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68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30.

다. 회부연월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음(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사항

□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 현행법 제2조 및 제24조의4에 따르면 유족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손자·손녀), 부모(조부모)가 되며¹⁾, 급여를 받을 순위는 상속순위²⁾를 따름.

1) 「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2)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와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³⁾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등이나 유족급여 수급 선순위자 등을 고의로 사망케 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연금 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유족에게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유족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함.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부모가 이혼·가출 등의 사유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 후 금전 보상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고,

○ 헌법재판소는 양육책임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⁴⁾

3)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4)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⁵⁾되었고,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여러 법률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며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를 해당 법률의 보상체계와 결부시키는 입법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4대 직역연금⁶⁾ 중 별정우체국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경우 모두 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법률이 개정되었음.⁷⁾
- 현행법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직원등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 등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시 부양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고려하면,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의 연금 수급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짐.

5)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6. 1. 1. 시행예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6)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7) 「공무원연금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급여의 제한 등 관련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봄

「군인연금법」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따라서 직원등의 유족의 양육책임 이행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또한 직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타 법령과 동일하게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현재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가 유족급여를 수급받는 경우는 드물어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수급자 및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 2024년 말 기준)

구 분	유족 구분				연간 지급총액
	배우자	자녀	부모	합계	
수급자 수	303	6	9	318	4,538,368

* 자료: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또한, 기존 법령에 따른 급여 제한은 그 금액 기준 등이 법령에 모두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사기구가 필요치 않았으나, 신설되는 제한 사유는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 보다 충실한 심사를 통한 심사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양육책임 이행 수준을 심의·판단할 주체와 그 구성, 심의방식 등에 대한 선행 검토와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현행법 제25조의14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경우 그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비업무상 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⁸⁾.

○ 종합해 보면, 개정안과 같이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에 따른 유족급여의 수급 제한 또는 차등 지급을 제도화할지 여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관련 입법례 및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부칙 관련

- 한편, 개정안 부칙의 경우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기존에 지급된 급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재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유족 중 법 개정 후 급여의 제한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기존에 결정된 수급권의 내용이 사후 변경됐다는 점에서 기존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는 있음.

8)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①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비업무상 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앞서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급여 등 제한이 신설된 타 법률에도 모두 동일한 형태의 적용례가
규정되었다는 점, 동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기존 유족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 발생의 우려는 크지 않아 보임.

문 의 처
02)6788-5235

※ 참고자료. 별정우체국 연금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⁹⁾하고자 1982년 도입된 특수 직역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과 유사하게 운영

※ 근거법령: 「별정우체국법·시행령·시행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공무원연금제도와 비교

구분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부담률	기준소득월액의 9%	좌 동
지급률	1.7%	좌 동
지급요건	10년 이상 재직, 수급개시 연령 65세 (2023년 61세→2033년 65세 도달)	좌 동
급여체계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퇴직수당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비업무상장해연금)*, 퇴직수당

* 별정우체국연금의 업무상 재해보상 분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고 있음

□ 부담금 및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의 종류		비 고
부담금	개인부담금	당월분, 소급분 군소급분(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자 : 본인
	피지정인부담금	"개인부담금과 동일"		부담자 : 국가
급여금	단기급여	재해보조금, 사망조위금		부조급여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소득보장급여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소득보장급여
		장해급여	비업무상장해연금	소득보장급여
		퇴직수당		근로보상급여

9) 「별정우체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便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